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단3242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임호택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김정일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변론 종결2024. 5. 1.

판결 선고2024. 6. 1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000,445원 및 그 중 16,319,399원에 대하여 202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9,000,4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19,000,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 표와 같이 대출하였다.

D 대출	2021. 2. 14.	2028. 2. 24.	17,000,000원	변동(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율 (현재 12.5%)
가계일반자금 대출	2018. 8. 29.	2028. 8. 25.	35,600,000원	변동(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율

나. 피고 B가 각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3. 5. 9. 기준 각 대여금채권은 다음 표와 같다.

D대출	16,319,399	1,665,591	234,731	18,219,721
가계일반자금대출	-	780,724	-	780,724

다.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처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A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3. 2. 20. 말소되었고, 2023. 2. 16. 채권최고액 5,17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A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은 2004. 12. 2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3. 2. 1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들 슬하에 E생 아들, F생 아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9,000,44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6,319,399원에 대하여 202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고,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은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2. 12. 2.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이후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9,000,44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들이 2022. 10. 19.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3,000만 원, 대출금은 8,400만 원으로서 4,6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피고 B는 혼자 거주하던 원룸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2015년식 맥스크루즈 자동차를 소유하고, 피고 C은 생활비 부족으로 친정 모 G으로부터 1,85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피고 B의 부정행위 위자료, 양육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재산분할의 상당성 가) 분할대상 재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및 A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22. 11. 24. '피고 B가 자녀들의 대학교 졸업시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혼합의를 한 사실, A은행의 2023. 2. 13.자 담보평가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거래가는 1억 2,5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피담보채무는 2022. 12. 2. 기준 27,474,481원과 18,264,170원인 사실, 피고 B는 증여계약 당시 위 각 피담보채무를 포함하여 I조합 10,000,000원, J 46,406,000원, K 6,971,000원, L저축은행 9,473,000원, M카드 3,391,000원, 7,972,000원, 4,550,000원, N카드 2,875,000원, O카드 2,725,000원, 2,974,000원, P카드 12,091,000원, Q 22,356,000원, 원고 16,319,000원, 합계 193,841,65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적극재산	임대차보증금	5,000,000
중고차	12,000,000		
소극재산	원고에 대한 채무 등	193,841,651	
피고 B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51,841,652		
피고 C	적극재산	없음	0
소극재산	없음1) 피고 C는 생활비 부족으로 친정 모 G으로부터 1,85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 C가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피고 C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이다.	0	
피고 C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0		

나) 재산분할의 방법과 재산분할의 상당성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의 순재산이 -51,841,652원이고, 피고 C의 순재산은 0원 또는 -18,500,000원이어서,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일부 분담하지 않는 방법의 재산분할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은 이를 초과하여 피고 B가 79,261,349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한 것이어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9,261,349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9,000,445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2. 12. 2.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9,000,445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9,000,4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주은영

별지

1) 피고 C는 생활비 부족으로 친정 모 G으로부터 1,85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 C가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피고 C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이다.